

의안
번호

548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11. 24.

전문위원 강영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소형준 의원 외 15명

나. 의안번호 : 제548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11. 04.

라. 회부일자 : 2025. 11. 14.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필수사항 등을 반영하고
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
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 신설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5. 11. 6. ~ 2025. 11. 10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 법에 맞게 정비하고,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○ 안 제2조(설치 및 기능) 정비

제1호: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제1항에서 구청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규정을 정비하여, 현행 조례에 동일 내용으로 별도 기재되어 중복 되었던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세부 기능을 삭제함.

제2호: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으로 기능을 확대함.

이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아동빈곤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되, 그 기능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해당 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단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, 아동복지 심의위원회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치 및 기능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	제2조(설치 및 기능) ----- ----- -----.
1.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	1.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제1항에서 구청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
2.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	2.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
3.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	<삭 제>
4.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	<삭 제>
5.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	<삭 제>
6.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	<삭 제>
7.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<삭 제>

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 보호·지원 전반을,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기능상 연계성과 보완성이 있으며, 정책 추진 체계가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.
- 따라서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면 아동 지원정책을 보다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상위법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)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각각 둔다.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,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.

<개정 2020. 12. 29., 2021. 12. 21., 2024. 2. 6.>

1.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3.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
4.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
- 4의2.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
5.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
6.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
7.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)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)을 말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1.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, 학부모 단체, 아동·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